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전 문 위 원 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3. 10. 11.

나. 회부일자 : '93. 10. 11.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
므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통합운용

5. 검토보고

[보고자 전문위원 안 창 국]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의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
충청북도 조례 제1946호로 제정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회계의 능율성을 기대하기가
지난한 실정인바,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9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 및 조례폐지 준칙 시달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